

제17차 고문방지위원회 활동 보고서

김수지/민가협-인권협

I. 사전 준비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사면위원회 London본부), Human Rights Watch (New York), SOS-Torture (Geneva) 등과 연락하여 고문방지위원회 정보와 각국제단체의 계획 등을 알아보았다.

-Amnesty International:

담당: Clare McVey

내용: 한국에 대한 보고서 위원회에 제출 (10월 말)

현장에서 모니터, 한국에 대한 로비활동은 계획 없음

현장에서 도움을 줄 엠네스티 대표단:

Isabelle Scherer & Fiona McElree

15 Route des Morillons

1218 Grand-Saconnex, Geneva

Tel) 41 22 798 2500

-Human Rights Watch:

담당: Mickey Spiegel & Chung Yong-wook

내용: 한국에 대한 보고서 제출계획 (10월 말) - 확인못했음

현장에는 참석 불가능

-SOS-Torture:

담당: Eric Sottas & Fernando Mejia

내용: 한국에 대한 보고서 제출 (10월)

현장에서 모니터, 로비활동 계획 없음

II. 참가기간 활동 (11월 11일 - 11월 14일)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이번 제17차 고문방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가입국가중 러시아, 한국, 알제리아, 우루과이, 폴란드와 조지아의 심의가 있었고 한국은 13일 하루 심의를 받았다. 인권의원 회의는 달리 고문방지위원회 회의중에는 위원과 정부대표의 발언권이 없으므로 다음은 회의기간 모니터 및 로비활동내용이다.

-11월 11일: 고문방지위원회 회의첫날 - 간단한 절차 및 안전 정리후 비공개회의 위원 경단

Alexis Dipanda Mouelle (Cameroon) - Chairman

Alejandro Gonzalez Poblete (Chile)

Bent Sorensen (Denmark)

Alexander M. Yakolev (Russian Federation)

Julia Iliopoulos-Strangas (Greece)

Peter Thomas Burns (Canada)

Guibni Camara (Senegal)

Georghios M. Pikiis (Cyprus)

Mukunda Regmi (Nepal) - 한국 차보고관 (Co-rapporteur)
 Bostjan M. Zupancic (Slovenia) - 한국 보고관 (Rapporteur)

오후 1:30시 Sorensen과 만남 - 의사신분으로서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및 고문방지협약 제10조와 관련하여 고문에 대한 교육,
 특히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고문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할 계획.

오후 2:00시 Regmi와 만남 - 한국 정부보고서 및 민간 국내국의단체
 보고서 모두 검토 해본 듯 했지만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은
 듯 보였고 한국은 러시아나 알제리아와 비교해볼 때 "비교적"
 좋다함.

오후 2:30시 Burns와 만남 - 한국관련보고서 읽어보지 못함. 그러나
 문제의식은 있음. 그러나 별 관심 없어보임.

오후 3:30시 SOS-Torture 방문 - Eric Sottas (소장)와 한국보고서를
 준비한 Fernando Mejia와 예기나눔. 보고서는 우리 보고서와
 매우 흡사하고 국보법과 불처벌문제 집중 거론. 회의 이후
 결과문서 보내주기로 함.

오후 5:00시 Amnesty 방문 - 한국관련 보고서 받음.

- 11월 12일: 러시아 심의 - Pikiš 보고관 & Burns 차보고관
 오후 1:00시 Zupancic과 점심 - 한국의 국보법, 불처벌, 피해자대책
 문제 거론했지만 크게 관심없어보임.
 고문으로 인한 유죄판결의 숫자, 사형집행숫자 등 질문.
 한국의 문제가 별로 특별하다고 느끼지 아니한 것 같음.
- 11월 13일: 한국 심의 - Zupancic 보고관 & Regmi 차보고관
 주제네바유엔한국공사관의 황용식 공사를 비롯하여 총 10명의 한국정부
 대표단과 한국민간단체대표로서 민변의 차지훈변호사와 민가협의
 김수지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정부의 최초 심의가 이루어졌다.
 (아래 심의내용 참고)
- 11월 14일: 고문방지협약외의 유엔관련 정보 문의
 유엔 인권이사회 제2차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하여 문의 - 91년에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한국정부 최초 보고서에 이어 올해
 7월까지 제출되기로 하였던 제2차 보고서 (아직 작성중)는
 빨라야 내년 가을쯤 심의받을 예정. (인권이사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B 규약]을 관할하는 위원회로서
 한국은 90년 가입)

III. 심의내용

가. 한국정부 발언 및 인사

한국정부는 자유 민주주의를 존중하며 한국헌법은 고문을 허용하지 않는등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뿐만아니라 한국헌법은 고문방지협약이 한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하고 국가의 안보에 대하여 언급하는 헌법 제37조 2항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고문과
 같은 가혹행위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과 남한이 대치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

황'은 인정되어야 한다. 고문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으며 고문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문제없다. 고문에 대한 교육은 당국으로부터 이루어지며 교도소나 경찰등은 감사 및 검사를 받는다. 96년 7월로 개정된 형법이나 97년 1월로 개정될 행형법은 보석제도와 가석방제도를 보다 폭넓게 사용토록하고 연행 및 구금을 법절차에 따라 엄격히 시행하도록한다. 또한 국내에 고문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담당할 독립적인 인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독재정권이 아닌 문민정부하에 개방되고 다원화된 사회이며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내의 여러 민간단체들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나. 보고관 및 위원 발언 및 질문

Zupancic 보고관 발언 및 질문

1993년 현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루어진 4만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면조치등 얼마안되는 고문을 자행한 경찰관들에 대한 처벌은 환영하는바이나 독재정권에서 문민정권으로의 이전은 시간이 걸릴것으로 결코 쉬운과제는 아닐 것이다. 전국에 3,700여명에 지나지 않는 변호사는 아무리 법적기반이 웬바라다할지라도 이를 시행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숫자로서 힘들것으로 추측된다. 여러 민간단체들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은 그 규정이 매우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이용될수있으며 특히 국보법 제7조가 그렇다고 한다. 또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은 이해하기 힘들고 국보법은 많은 양심수를 구금하고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간단체들은 또한 고문은 법정근거로서 자백을 강요하기위한 수단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수사문화는 범규정과 달리 현실에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또 민간단체들은 불처벌 문제를 거론하며 고문을 자행한 많은 공무원 및 수사관들이 처벌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은 또한 국보법관련 사건일 경우 50일까지 구속하며 한국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3개의 기관인 경찰청, 안기부와 기무사는 잠안재우기, 협박, 폭행, 성추행, 구타등 고문 및 가혹행위를 수사중 일상적으로 자행한다고 한다. 다음은 한국정부에 대한 구체적 질문사항들이다.

- 형법과 같은 국내법에는 고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고문범죄에 대한 국내법상 규정은 왜 없는가?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의하면 고문에 대한 정의규정은 국내법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 피의자 심문과정에서 변호사 참여권은 있는가?
- 구금자들의 권리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가?
- 수사기관이나 구금시설에 대한 검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진다면 누가 어디에다 보고하게 되있는가?
- 한국정부보고서에는 '주요범죄'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신적 피해를 가한행위는 '주요범죄'로서 취급되는가?
- 검찰이 고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고발/고소를 기각할 경우), 법정은 수사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가?
- 국가보안법내에는 기본권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
- 김영삼정권 출범이후 국가보안법사건은 있는가?
- 한국의 출입국관리법과 추방관련법에 대하여 설명하라.
- 정부보고서는 고문을 시도하려한 행위도 처벌대상이라 하는데 이는 어떻게 실행되는지 설명하라.
-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 고문고발에 대한 수사를 기각할 수 있는가?
- 고문에 대한 수사는 누가하는가?
- 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는가?
- 50일이라는 구금기간은 지나친 것 같은데 수사에 관한 규율, 특히 국보법 사건의 수사에 대한 규칙 같은 것은 있는가?
- 징벌방의 크기는? 소위 '먹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 의료계 사람들, 특히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문관련교육은 있는가?
- 피해자들의 고소/고발 없이도 고문에 대한 수사를 하는가?
-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 협약 제15조는 고문으로 인한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서 인정될수없도록 되어있는데, 한국에 현실은 어떠한가?
- 정부는 고문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의료적제도가 있는가?

Regmi 차보고관 발언 및 질문

과거정권하에서 자행된 고문으로 인한 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조치가 있어야한다. 한국정부보고서에는 고문에 대한 명백한 정의규정이 없으며 협약 제1조에 따라 국내법에는 고문에 대한 정의규정이 포함되어야 할것이며 합당한 처벌과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헌법중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37조 2항은 협약 제2조 2항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문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은 금지한다')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인용하는 자료에 의하면 독거수용 및 30에서 50일까지의 구금기간중 자행되는 잠안재우기, 협박, 폭행, 구타 등 여러 가지 고문 및 가혹행위가 존재한다고 한다. 한국에 대한 다음심의회가 있을때까지 한국의 열악한 교도소 실태는 개선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법규정만으로서의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방지하고 처벌하는데 부족하다. 협약 제10조에 따라 고문에 대한 교육, 특히 의료인들이나 교도관들의 교육은 중요한데 한국 정부보고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다. 또한 정부보고서는 연행 및 구금관행에 대한 정보나 수사규칙과 구금자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외부와 완전차단(Incommunicado)된 구금이 있는가? 구금시설은 어떠한가? 고문에 대한 수사는 누가하는가? '반국가' 내지는 '이적'이라는 표현은 공정성을 갖추기 힘들고 국가보안법은 유엔인권위원회 및 인권이사회등으로부터 폐지권고를 받은 바 있다.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조치는 누가 책임을 지고 있으며 최대한 가능한 손해배상은 무엇인가?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인권협과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제기된 박창희, 고애순, 유정식, 박동운, 김성만, 황대권 등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야할 것이다.

Sorensen 위원 발언 및 질문

군사독재정권에서 문민정권으로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고 대중에게 고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소식은 환영할 소식이다. 그러나 협약 제10조와 관련하여서는 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트레이닝과 교육도 이루어져야하는 것이다. 의사는 고문을 당한 사람을 처음으로 보거나 교도관들과 같은 공무원에게 건강시설관련 조언을 제공하는등 고문을 방지하는데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들로서 이들에게 고문교육은 필수적인데 정부보고서는 의사들에 대한 고문교육과 관련하여 전혀 언급이 없다. 4가지의 수사규칙이라할 수 있는 [1-가족들에게 연행사실 통보; 2-변호인 접견권; 3-의료인 접견권; 4-피의자권리 고지]는 구금기간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의과대생, 의료인, 정신과 의사, 경찰, 교도관, 군부의료인 등에 대한 고문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사들의 독립적인 행동규칙/원칙은 있는가? 협약 제14조는 손해배상 및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적조치를 언급하는데 한국에는 고문피해자들을 위한 재활센터가 있는가? 없다면 이러한 기관을 새울계획은 있는가?

Gonzales Poblete 위원 질문

- 현정권의 사면에서 배제된 '위험한' 인물들이란 누구인가?
- 사면된 사람중 과거 독재정권의 인물들은 있는가?
- 협약 제21 (국가통보권), 22조 (개인청원권) 유보사유는 무엇인가?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과는 무관하다.
- 군부법정 및 일반 법정, 판사, 검찰 등은 독립적인가?

Liopoulous-Strangas 위원 질문

- 협약 제21, 22조 유보사유는 무엇인가? 북한과는 무관하다.
- 헌법재판소 판사는 정부와 독립되어 있는가?
- 협약 제3조는 인도/추방대상이 국외에서 고문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인도/추방하지 않을 의무를 가입국가에게 부여하는데 한국 출입국관리법은 이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 협약과 국내법이 충돌할 경우 협약은 존중되는가?

Yakolev 위원 발언 및 질문

- 간첩혐의를 처벌하는 규정은 형법에도 있는데 국가보안법은 왜 필요한가?
- 형법상 고무.동조죄가 규정되었는데 형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국보법 제10조 불고지죄를 봐서라도 국보법은 불필요한 것 같다.

Burns 위원 발언 및 질문

- Yakolev 위원이 예기했듯이 국보법의 불고지죄는 마치도 Nazi나 쿠바의 감시제도를 연상케 한다.
- 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엇인가?
- 시효 때문에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자행되었던 고문사건들의 처벌이 불가능한가?
- 고문사건의 민사소송 공소시효는 무엇인가?
- 어떤 범죄들에 한해 사형이 선고되며 사형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행되는가? 사형수는 어떤 항고가 가능한가? 사형의 집행에 대한 처수나 사면 등의 숫자는?

Mouelle 위원장 질문 (형식적 질문)

- 유엔 고문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에 한국정부는 기부하고 있는가? 없다면 할생각은 있는가?

다. 한국정부 답변

- 유엔 고문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에 작년기부했던 금액의 두 배인 US\$20,000을 기부하겠다.
- 국보법
 - *국보법은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조치이다.
 - *최근 북한잠수함침투사건에서 증명되었듯이 북한과 관련된 여러 반국가 활동이나 전복적 위협에 대항해야 한다.
 - *또한 국보법은 개정된 바 있다.
- 민간단체보고서
 - *민간단체보고서의 국내법에 대한 해석은 왜곡되고 근거없는 것이며 내용은 과장됐다.
 -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원칙으로 국내법은 이행된다.
 - *소위 '먹방'은 존재하지 않는다.
-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 *국내민간단체보고서와 같은 내용으로서 앰네스티보고서는 객관적이지 못하다.
 - *9월의 앰네스티 한국방문은 정부측과의 아무런 접촉없이 일방적이었다.

*박충렬씨는 구속기간중 13명의 변호인과 접견이 있었으며 95년 12월 7일에는 의료진단결과 고문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문에 대한 정의규정

- *형법에는 고문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지만 헌법상 고문행위는 범죄로 포함된다.
-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고문에 대한 개념이 보다 넓고 포괄적이며 고문을 시도하려는 행위까지도 범죄로 포함된다.
- *수사관 및 공무원들의 모든 가혹/폭력 행위는 처벌가능하다.

-구금기간

- *구금기간은 수사관들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판사들로부터 결정된다.
- *구금기간은 원칙으로 10일이며 이를 연장할 경우 판사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 *10일 이상의 구금기간 비율은 8.5%에 지나지 않는다.
- *국보법관련 사건들은 간첩죄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당히 복잡한 사건으로 수사가 길어지며 그 피의자들의 은밀한 국내의활동을 견제하기위해 50일까지의 구금기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0.2%의 국보법사건 무죄선고는 그 피의자들이 견제되어야하는 범인임을 증명한다.

-변호인 참여권

- *심문과정에서 변호인은 참여할 수 없지만 접견권은 완전보장된다.

-외부와 완전차단(Incommunicado) 구금

- *변호인접견권이 보장되므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있을 수 없는일이다.

-변호인 접견권

- *변호인 접견권은 제한될 수 없지만 압수수색을 위하여 변호인 연락후 접견권은 연기될 수 있다.

-의료인 접견권

- *행형법 제87조에 의하여 피의자 및 구금자는 언제라도 자신이 원하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미란다 원칙

- *피의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받아야 된다.
- *이 원칙을 이행하지 않는자는 처벌받는다.

-외국인 추방/인도 문제

-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협약 제4조

- *1995년 1월부터 1996년 8월 31일 사이에 한국에서는 고문과 관련하여 200건의 고발이 있었는데 이중 11건이 기소되고 29건의 처벌이 정지되고 10건이 기소정지되고 32건의 수사가 정지되고 43건이 현재 수사중이다. 기소정지는 행위가 중대하지 않을 경우이며 처벌이 정지된 경우는 주요증인이 없을 경우이며 이럴 경우 항소할 수 있다.
- *근래에 국보법 구속자수가 증가하였다.

1989년 - 420명

1993년 - 122명

1990년 - 449명	1994년 - 336명
1991년 - 320명	1995년 - 246명
1992년 - 305명	1996년 - 224명

이는 최근에 이적단체사건이 많았기 때문이다.

-공소시효

*고문에 대한 공소시효는 치상일 경우 7년 치사일 경우 10년에서 15년으로 고문에 대한 공소시효는 그의 비슷한 행위보다 길다.

-의료인 고문교육

*의과대내에 고문에 관한 교육은 포함되 있지않지만 판사들은 고문사건과 관련하여 각별한 주목을 갖고 처리하도록 한다.
 *의사들의 독립적인 행동규칙/원칙은 만들어지고 있는중이다.
 *법의료인들은 치사의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교육받는다.
 *또한 여러 정부기관에서는 세미나 및 특수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징벌

*국내의 징벌방은 크기 1.75 m² 부터 5.7 m² 까지이다.
 *소위 '떡방'은 존재하지 않는다.
 *징벌기간중 폭력은 허용되지 않는다.
 *징벌조치전 의료진단으로 건강이 허락해야 하며 징벌조치중에도 의료진단은 정기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재활

*현재 고문피해자들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은 없지만 손해배상은 이와 같은 재활을 위한 비용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1992년 1월부터 1996년 7월까지 29건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는데 9건의 손해배상이 있었고 2건은 기각되었고 18건은 현재 진행중이다. US\$200,000이 가장 많은 액수의 배상이었다.

-교도소내의 의료인

*국내 교도소 총 의사숫자는 90명이다.
 *기본 의료진단이후 추가의료진료가 필요할 경우 외부진료가 가능하다.
 *각종 예방진료 이행되며 가혹행위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보고된다.

-협약 제21, 22 조 유보 문제

*이는 정치적으로 북한 및 재야가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보한 것이다.
 *북한과의 문제가 개선될 경우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장기수 제도 설명

(생략)

-장기수 문제

*20년이상 구속되어있는 장기수는 22명으로 이들은 모두 인류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간첩 및 게릴라로서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되는 위험인물들이다.
 *회개할 경우 가석방가능하다.

- *한국정부는 자비함으로 93년에는 다섯번의 사면이 있었다.
- *장기수들에 대한 차별대우는 없다. 접견권, 식사제공, 모두 보장된다.

라. 위원들의 제질문

- Pikis 위원: '회개'란 무슨 의미를 두고 말하는가? 가석방은 객관적인 조건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인데 구금자의 믿음이나 생각으로 결정된다면 이는 많은 우려를 살일이다.
- 정부답변: 행형법은 이를 고려하도록 하겠다.
- Mouelle 위원장: 위원회에 첨부 보고하도록 하라.
- 정부답변: 알았다.

마. 고문방지위원회 결론과 권고사항

인사말

한국정부의 구체적인 보고서를 시간에 맞춰 제출한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긍정적인 면

1. 1993년이후의 개정들은 환영한다.
2. 또한 법률적인 개정도 환영한다.
3. 사면과 같은 조치는 격려한다.
4.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법적 (ie. 변호인 선임)도움은 격려한다.
5. 많지는 않지만 몇몇사례의 고문가해자들의 처벌과 고문으로 인한 자백의 재판증거 불허는 격려하는 바이다.
6. 한국에 남아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문제의식도 고맙게 생각한다.
7. 미국, 프랑스, 캐나다와 오스트렐리아와의 상호법적조약 또한 환영한다.

장해요서

한반도의 대치상태로 인한 예민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도 고문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은 용납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우려사항

1. 협약 제1조에 따라 고문에 대한 정의규정이 한국국내법에 없음은 규감이다.
2. 민간단체들에 의하면 정치적 피의자들은 자백을 위하여 잠안재우기 등의 고문을 일상적으로 당한다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으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
3. 기소되기전까지의 심문기간은 너무 길다.
4. 고문과 관련된 고소/고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공식적인 고발로서만 이루어지는 조사는 용인할 수 없다. 형식적인 고발절차 없이도 고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져야 한다.
5. 국가보안법은 자의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국보법의 모호함은 이러한 가능성을 낳게한다.
6. 정부보고서에는 단지 1건의 손해배상사례를 기재하는데 이를봐서라도 한국의 손해배상제도는 효력이 없는 듯 하다.

7. 피의자들이 영장외의 아무런 법적조치 없이 10일까지 구금될 수 있는 것은 고문을 가능케할 것으로 보인다.

권고사항

1. 협약 제1조를 수용하는 고문에 대한 정의규정을 법률화해야 한다.
2. 국내법은 고문방지협약 및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3. 경찰, 교도관, 의료인 등 그밖의 공무원들의 교육과정에는 고문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교도소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5. 가혹행위에 대한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고문방지위원회에 보고하라.
6. 30일 내지는 국보법사건의 경우 50일까지의 구금기간은 너무 길으므로 줄여라.
7. 협약 제15조에 따라 심문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8. 협약 제21, 22조에 대한 유보사항을 제검토하라.

정부답변

한국정부는 고문방지위원회에게 감사를 표하고 위원회의 의견 및 권고사항은 국내 정책과 결정과정에 있어서 반영될 것이다.

IV. 재정

왕복 비행:	65만원
비엔나/제네바 기차 및 버스:	20만원
5박 6일 숙박:	13만원
7일 식대비 및 기타 비용:	17만원
	115만원

V. 평가

-준비과정 초단계에서 부터 참여하지 않은 관계로 많은 말은 못하겠으나 일단 좀더 빨리 그리고 좀더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못한 관계로 보고서의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위원들에게 전달 되는 것이 늦어지고 그로 인하여 위원들로 하여금 세밀하게 읽혀지지 못한 것 같다. 여러 사람들의 준비와 보고서에 투자된 고민과 시간등 노력을 생각하면 너무도 아깝고 안타까운 일이다. 다음에는 보다 계획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겠다.

-현장에서 국제민간단체를 만나고 위원들을 로비하는등 정부발언을 모니터하는 차원에서 민간측 대표는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로비활동은 우리대표가 하는 만큼 국제민간단체와의 연대는 현장에서보다는 보고서차원에서 있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보고서가 늦어짐에 따라 국제단체는 우리 보고서의 참고없이 쓰여질 수 밖에 없었고, 이는 보고서의 초점을 통한 보다 깊은 코디내션을 이룰수가 없었던 것으로 깊은 유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네스티와 SOS-Torture 등의 보고서는 (보고서 직접 참고) 상당히 초점을 명확하게하여 쓰여졌고 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인정되고 인용됐다.

-회의기간중에는 참고할 자료 읽어야할 보고서등 여러모로 위원들이 바쁘므로 이 기간에 보고서를 읽고 분석할 시간은 없는 것으로 알아야 될 것 같다. (한국담당위원의 경우 한국민간대표와의 만남으로 민간단체보고서의 질문 등을 포함하여 [필기로 적한] 심의발언을 하였으나 마지막 결론과 권고사항의 전달에서는 사전에 [컴퓨터로] 준비된듯한 내용을 읽었을 뿐이었다. 심의과정중의 많은 강한 질문과 발언은 결론/권고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 기간중 로비활동을 통하여 문제의식을 정리하

게 하고 초점을 맞추는등 담당위원과 만나 로비하는 것은 중요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 위원들은 물론 정부측에도 민간차원의 관심과 참여 및 감시역할을 의식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다시한번 강조해야 할점은 이러한 활동도 보고서의 빠른 제출없이는 효력이 상당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중요하고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일이라도 언론의 무관심속에서는 척도 새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기 마련이다. 이번 심의가 한국의 고문에대한 최초 국제무대인 만큼 많은 시민들에게 한국의 고문실태에 대해서 알리고 정보와 문제의식을 배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과를 못얻어냈다는 것은 지극히 아까운 일이다. 현장에는 한국의 언론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심의 기간 전후로 별다른 관심도 없는 듯 했다. 다음에는 현장주위에 있는 알고있는 모든 언론인/언론기자 등을 연락하고 동원해 관심을 갖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겠다.

-사형제도에 대하여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한 정보나 고민 및 지식과 연구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DHL로 돈들여 보고서를 보낸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집에서 받아본 위원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비엔나를 통하여 제네바로 가는 일은 절대적으로 금지!

VI. 결론

권고사항은 상당부분 구체적이므로 이를 갖고 (특히 권고사항 5번) 물고늘어지며 끈임없이 추구해야겠다. FOLLOW-UP!!!

제17차 유엔 고문금지위원회 참가보고

보고자 차 지 훈

1. 반박보고서 작성 및 제출 경과

가.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 금지협약(다음부터는 고문금지협약이라 함)은 유엔총회에서 1984년 채택되고, 1987.6.26. 발효되었다. 현재 100개국에서 협약을 비준 혹은 승인하였고, 그 중 31개 국가에서 선택조항인 협약 제 21 조(국가통보권), 협약 제 22 조(개인청원권)을 승인하였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협약 제 19 조에 따라 국내에서 협약 발효 후 1년내에 협약이행에 관한 보고서(최초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후 매 4년마다 추가, 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보고서(정기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나. 한국정부는 1995. 1. 19. 고문금지협약에 가입하였고, 1996. 2. 10. 협약 제 19 조에 따른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1996. 4. 16. 한국인권단체협의회(다음부터는 인권협이라함) 소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다음부터는 민변이라 함), 인권운동사랑방(다음부터는 사랑방이라 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다음부터는 민가협이라 함), 민주주의법학연구회(다음부터는 민법연이라 함) 및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다음부터는 인의협이라함) 등 5개 단체가 참가하여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작성을 위한 최초 모임을 가졌다. 반박보고서는 개요(민변, 차지훈), 국가보안법(민법연, 김한균), 형사법일반(민변, 김진욱), 교정시설(사랑방, 박래균), 불처벌(민가협, 남규선), 배상제도(민법연, 김한균)로 나누어 초안을 작성하였고, 민변의 김은영씨가 고문금지위원회 및 국제인권단체와의 접촉을 담당하였다. 보고서작성모임은 대체로 2주에 1번씩 열렸으며, 자료의 수집과 초안에 대한 의견교환 과정을 거쳐 한글본이 같은 해 9. 15. 경 1차 완성되었고, 완성된 1차 한글본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 회의를 갖은 후 영역작업에 들어 갔다. 영역은 민가협의 김수지씨가 담당하였으며, 나중에 민변의 허경미씨도 최종 검토하였다. 10. 중순 경 완성된 영역본을 1차로 인권협의 이성훈씨를 통하여 제네바에 보냈고, 위원회 위원들에게는 DHL로 우송하였다.

2. 고문금지위원회의 참가 경위

가. 고문금지위원회의 회의일정은 위원회 사무장인 Mr. Bruni 를 통하여 미리 입수하였다. 제17차 고문금지위원회는 유엔의 유럽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1996. 11. 11. 부터 같은 달 22. 까지 열리고, 2주간의 회의기간 중 한국은 러시아에 이어 11. 13. 두번째로 심의되었다.

나. 민간단체의 대표로는 민변의 차지훈과 민가협의 김수지가 파견되었다. 대표파견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자금지원이 있었다.

다. 1996. 11. 9. 아시아나항공편으로 서울을 출발하여 현지시각으로 11. 9. 오후 비엔나에 도착하였고, 밤기차편으로 제네바로 이동(이동시간 13시간)하여 다음날 아침 제네바에 도착하였다. 제네바에서는 제네바대학 부설 아시아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있는 이우현씨가 마중 나왔고, 숙소를 미리 예약하여 두어 편하게 묵을 수 있었다. 숙소는 학생 및 유엔회의참가인들이 묵는 일종의 기숙사인 Saint Justine 으로 물가가 비싼 제네바사정에 비추어 매우 저렴한 가격에 시설도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니었고, 유엔빌딩까지도 그다지 멀지않아 편리하였다.

라. 11. 11. 월요일 유엔으로 갔다. 일반인은 출입의 제한이 있고, 회의참가를 위하여 온 방문인은 별도의 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하였다. 민간단체의 경우 유엔기구에 의하여 인정된 몇몇 국제기구이외에는 회의참관출입증의 교부가 안되나 Mr. Bruni 가 우리들에게 회의참관을 할 수 있는 출입증을 교부하여 주어 회의기간내내 편리하게 유엔건물과 회의에 출입할 수 있었다. 회의참관전 잠깐 Mr. Bruni를 만나고, 유엔인권센터에서 일하는 이완희씨를 만나 한국보고서 심의시 녹음을 부탁였다.

3. 제17차 고문금지위원회의 일정 및 위원들 명세

가. 제17차 회의에서는 러시아, 한국, 알제리, 우루과이, 폴란드, 조지아 등 6개국의 보고서를 심의하게 되어 있었다. 한국은 11.13.수요일 하루동안 심의되었다.

나. 위원들은 모두 10명으로 Mr. Peter Thomas Burns(Canada), Mr. Guibril Camara(Senegal), Mr. Alexis Dipanda Mouelle(Cameroon), Mr. Alejandro Gonzalez Poblete(Chile), Ms. Julia Iliopoulos-Strangas(Greece), Mr. Georgnios M. Pikiis(Cyprus), Mr. Mukunda Regmi (Nepal), Mr. Bent Sorensen(Denmark), Mr. Alexander M. Yakovlev(Russian Federation), Mr. Bostjan M. Zupancic(Slovenia)이다. 의장은 세네갈 출신의 카마라씨로 그는 세네갈의 대법원장이고, 회의기간내내 두명의 수행원이 따라 다녔다. 한국에 대한 보고관은 슬로베니아의 대법원장(대법원장인지 헌법재판소장인지 정확치 않음)인 주판직씨이고, 공동보고관으로 네팔의 변호사인 레그미씨가 지정되어 있었다.

다. 위원들은 대체로 법률가가 많았고, 덴마크의 스렌센씨는 유일한 의사로 보였다. 나중에 이완희씨와 이야기 중 위원들 중 대법원장도 있다고 하니 그녀는 위원들 선출이 조약당사자국에 의하여 추천, 선출되므로 관료적 인물들이 많이 선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4. 회의전 로비활동

가. 한국에 대한 심의는 수요일 시작하므로 월요일과 화요일 회의는 참관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번엔 제네바에 온 목적이 한국에 대한 심의전 위원들을 만나 로비를 하자는 것이므로 월요일과 화요일 회의 중간 중간에 위원들을 접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나. 월요일 회의는 각 국가에 대한 심의가 아니라 위원회의 회의진행방식에 대한 회의였다. 회의장에는 방청석이 2층에 따로 마련되어 있었으나 위원들 뒤에 마련된 보조의자에서 방청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아침 앓은 곳이 한국 공동보고관인 레그미씨 뒤여서 회의 시작전 잠깐 소개를 하고 시간을 내어 달라고 부탁하여 14:00에 회의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오전회의 중 김수지씨와 함께 비교적 발언을 많이 하고, 인상이 괜찮아 보이는 위원을 찍어 접촉을 하기로 하였다. 오전회의가 끝났을 때 주판직씨에게도 시간을 내어 달라고 하였더니 선선히 다음날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였다. 일단 한국에 대한 보고관 2명과 모두 만나기로 약속을 하여 오전회의를 참관한 성과가 있었다.

다. 위원들은 비교적 개방적으로 민간단체의 접촉을 그다지 꺼려 하지는 않았지만 중간중간 휴식시간에 위원들에게 어떤 설명을 한다는 것은 그다지 효율적인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개별 국가에 대한 심의는 그 국가보고관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원들을 여러사람 만나는 것 보다는 그 중 보고관을 포함하여 꼭 접촉할 필요가 있는 위원을 선정하여 가능한 시간을 내어 달라고 하여 응낙하면 그 때 좀 더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라. 레그미씨와의 대화는 주로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그는 우리가 DHIL로 보낸 반박 보고서를 받아 보았고, 내용이 훌륭하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국제사면위의 한국보고서도 보았다고 하

였다. 그는 정부쪽에 영문으로 된 국가보안법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정부에서 아직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이 남용 사례를 이야기 하니 그는 국가보안법 구속자에 대한 사진(1995년 국제사면위보고서에 나온 사진으로 생각됨)도 보았다고 하였다. 그는 비교적 국가보안법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았으며, 나름대로 그에 대한 준비도 한 것 같았다. 레그미씨와 대화를 끝낸후 잠시 번스씨와 대화를 나누었다. 번스씨와는 불처벌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으나 그다지 오래 이야기 하지는 못하였다. 그의 이야기로는 불처벌과 구제문제, 협약에 대한 유보철회문제는 항시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마. 11. 12. 화요일은 러시아에 대한 심의였다. 이날은 2층에 있는 방청석에 앉았는데 러시아는 현재 국가가 혼란한 때문인지 방청객도 많았다. 점심시간(13:00시작됨)에 약속된 대로 주판직씨를 만나 유엔 건물내에 있는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식사를 같이 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주로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편이었다. 이야기의 중심은 국가보안법이었으나 그외에 불처벌 문제와 구제제도의 부실에 대하여서도 이야기 하였다. 공소시효나 고문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하려하였으나 14:00에 위원들 모임이 있어 일어서야 하였다.

바. 화요일 오후에는 다른 일정이 없어 계속하여 러시아심의를 참관하였다. 러시아 참관 중 소렌센씨를 만나 구문피해자에 대한 의료대책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5. 국제인권단체의 방문과 국제인권단체의 활동

가. 월요일 오후 SOS Torture 와 국제 사면위 제네바사무실을 방문하였다. SOS Torture의 의장인 Mr. Eric Sottas는 친절히 SOS Torture의 한국 보고서를 읽어 주었고(원문이 불어라서), Fernando Mejia는 나중에 위원회 결론 및 권고사항이 공식출간되면 이를 보내주기로 하였다. 국제사면위에서는 국제사면위 한국보고서를 1부 얻어 이후 활용하였다.

나. 회의기간내내 국제사면위와 SOS Torture, 그리고 국제인권봉사단 소속 인턴 혹은 직원이 나와 회의과정을 모두 청취하였다.

6. 한국에 대한 심의과정

가. 한국에 대한 심의는 11. 13. 하루동안 열렸고, 오전회의에서는 10:00경 시작되어 약 30분동안 위원들만의 비공개회의가 있었고, 10:35부터 심의가 시작되어 정부대표인 황영식공사의 기조발제(약 30분), 한국 보고관인 주판직씨와 공동보고관인 레그미씨의 질문(각 30여분씩)이 있었다. 보고관이외에도 소렌센씨, 곤잘레스 포블레씨, 일리오포올로스 스트란가스씨, 야코블레프씨, 번스씨 등이 질문을 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한 것은 전날 러시아의 경우 보고관을 제외하면 단 두명이 매우 형식적인 질문만 추가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위원들이 정부보고서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나. 한국정부대표단은 대표인 황영식공사를 비롯하여 법무부 검사3명, 내무부 2명, 국방부, 대사관 직원 등 모두 9명이 참가하였다. 그 중 법무부 신동현검사와는 출국전 만나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그는 토요일 도착하여 이틀동안 우리 반박보고서를 분석하고 답변내용을 준비하느라 매우 바빴다고 하였다.

다. 관심사항 및 질문내용

(1) 대부분의 위원들이 질문 머리에 한국정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간정부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과 그 이행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취지를 표명하였다.

(국가보안법 문제)

(2)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협약 2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없는 고문금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 레그미씨는 분단상황이 헌법 37조2항의 기본권유보조항과 국가보안법의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협약2조2항의 예외없는 고문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민간단체보고서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엔특별보고관 후세인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인용하면서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야코블레프씨는 국가보안법에서 형법과 별개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특히, 국가보안법 제 10 조에 규정된 불고지죄 같은 경우 형법에도 없는 처벌조항으로 매우 우려가 된다고 하였다.

- 불고지죄와 관련하여 번스씨는 이는 마치 나치와 쿠바의 주민감시제도와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하였다.

- 이와같이 위원들은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 주판직씨는 현정부의 출범이후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질문하였다.

- 민간단체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경찰청, 안기부, 기무사등의 수사기관에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혐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고문사례와 그에 대한 조사, 처벌과 관련된 문제)

(3) 민간단체의 보고서를 신뢰할만한 자료(a reliable source)라고 하면서 민간단체의 보고서에 의하면 아직도 한국에는 잠안재우기, 때리기, 폭언, 협박 등과 같은 고문이 관행화 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물었다. 특히 레그미씨는 최근 민간단체에 의해 보고된 고문사례로서 박창희, 고애순 등 수명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사실여부를 질문하였다.

(4) 한국정부가 과거정권과는 다른 민간정부라는 사실이 강조되어서 인지 많은 위원들이 과거 행하여진 고문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였다. 특히, 공소시효제도와 관련하여 공소시효로 인하여 고문범죄를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5) 고문범죄에 대한 수사주체가 누구이고,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 지는지, 검찰에서 조사거부한 사례가 없는지 물었다.

(고문방지교육과 관련하여)

(6) 협약 10조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보고서에 수사공무원, 특히 의료인에 대하여 고문방지와 관련된 교육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구금시설에서의 고문행위를 적발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교육과 구금시설에서의 진료활동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점과 관련하여 의사인 소렌센이 특히 한국정부에 의료인에 대한 교육과 구금시설내에서의 활동보장이 고문방지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다.

(구금에 대한 문제)

(7) 대부분의 위원들이 국가보안법의 50일 구금기간은 물론 형법이 최장구금기간인 30일도 지나치게 길고, 이르는 고문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금기간동안 법원에서 어떠한 관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8) 구금시설의 독방 크기가 협소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특히 징계의 경우 먹방(빛이 들어 오지 않는 방)에 수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였다.

(배상제도와 관련된 문제)

(9) 고문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금전배상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료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고문피해자를 위한 의료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10) 고문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가능한지와 외국인의 경우 배상가능 여부, 배상소송에 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고문에 대한 정의규정문제)

(11) 많은 위원들이 한국 국내법에 고문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는 사실과 처벌규정이 명확치 않은 점(특히 미수범의 경우)을 지적하였다.

(협약 21, 22조 유보문제)

(12) 위원들은 모두 한국정부가 내세우는 분단상황은 협약의 유보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유보의 철회를 권고하였다.

(구금자의 변호인, 의료인 접근권 문제)

(13) 고문방지를 위하여서는 구금자에 대하여 변호인과 의료인에 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히 수사중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기타)

(14)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내용 및 사형수 수와 사형선고시 이의제기 방법 등에 관하여 질문이 있었다.

(15) 협약 제 3 조와 관련하여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개인을 추방하지 않아야 하는데 출입국관리법은 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라. 대체로 약 1시간 30분동안 이루어진 위원들의 질문은 매우 다양하고, 그 수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남용가능성에 대한 경계와 과거 고문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구제 문제, 장기간의 구금기간, 의료인의 교육 및 고문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대책이 없다는 사실이 많이 언급되었다.

마. 정부의 답변

(1) 한국정부의 답변은 15:00에 시작된 오후회의에서 약 45분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정부의 답변은 위원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하여 전부 답변이 되지 못하였고, 답변된 내용도 그다지 충실하지 못하였다.

(2) 우선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하였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보고서는 왜곡되고, 과장된 것으로 믿을 것이 못된다고 하였다. 그예로 헌법의 기본권유보조항에 대하여 협약2조2항과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부분, 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이 국내법에 의하여 침해될 수도 있다는 부분, 억방은 전혀 없다는 것을 들었다. 국가보안법위반자의 수가 현정 부출범이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불법단체에 대한 수사가 많기 때문이며,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자 중 무죄율이 0.2%미만이라는 점에 비추어 국가보안법이 남용되고 있지 않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고문범죄의 정의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협약보다 넓게 처벌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구금기간은 10일이 원칙이고, 국가보안법의 구금기간이 긴 것은 수사의 어려운 때문이라고 하였다. 구금자에 대한 의료조치도 충분히 이루어 지고, 의료인에 대한 고문방지교육도 충실히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였다. 협약의 일부 조항을 유보한 것은 북한과 재야단체의 악용가능성때문이며, 이러한 위협이 사라지면 재고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장기수들은 게릴라로서 인류에 대한 범죄인이고, 이들에 대하여서 회개하면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였다.

라. 추가질문 및 심의의 종결

이와같이 정부의 답변내용이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 중 많은 사항을 빠뜨리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위원들의 추가질문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 유감이다. 다만, 장기수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대표가 회개하여야 한다고 한 점과 관련하여 피키스씨가 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회개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정부대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였다.

7. 위원회의 결론 및 권고

-결론 및 권고는 한국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종결되고, 30여분의 추식후 곧바로 한국보고관인 주판직씨에 의하여 낭독되었다. (작성은 주판직, 레그미씨가 공동작성)

머리말

구체적이고, 규정된 기간내 제출된 한국최초보고서를 환영하고 한국정부에 감사한다.

가. 긍정적인 면

1. 1993. 이후 달라진 많은 것을 환영한다.
2. 그 과정에서의 법개정 역시 환영한다.
3. 사면과 같은 조치를 환영하며, 격려한다.
4. 법률구조를 위한 조치에 만족한다.
5. 많지는 않지만 고문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진 점과 고문으로 얻는 자백을 법원이 거부한 사례도 격려한다.
6. 한국이 앓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한국정부가 인식하고 있음에 감사한다.
7. 미국,프랑스,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와의 상호사법공조조약의 체결을 격려한다.

나. 장애요소

한반도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협약 제 2조에 의하여 그 어떠한 특수한 상황도 고문이나 기타 비인도적 처벌이나 처우에 인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다. 우려사항

1. 협약 1조와 일치하는 고문에 관한 규정이 없다.

2. 민간단체보고서에 의하면 정치적이유로 고문당하는 사례가 많고, 잠안재우기와 같은 가혹행위가 관행화되어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3. 구금기간이 너무 길다.
4. 신속, 공정한 조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5.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규정이 많아 자의적 적용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6. 정부보고서는 고문피해에 대한 구제사례를 1건만 언급하고 있고, 보상제도가 매우 비효율적이다.
7. 수사기관의 1차 10일 구금기간동안 법원이 구금의 적법여부에 관여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은 문제이다.

라. 권고사항

1. 협약 1조와 일치하는 고문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어야 한다.
2. 국내법이 고문금지조약이나 기타 인권관련협약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수사기관종사자, 의료인에 대한 고문방지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4. 구금시설의 감시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5. 민간단체의 보고서에 언급된 고문피해사례에 대하여 조사하고, 위원회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6. 형사사송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구금기간을 축소하여야 한다.
7. 혐의자에 대한 심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8. 협약 21.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여야 한다.

8. 평가

가. 보고서의 제출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위원들에게 회의 3주전 DHL로 보내고, 위원회에 별도의 인편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원들 중 일부는 DHL로 송부한 보고서를 받아 보지 못한 것 같다. 일찍 보낸다고 반드시 위원들이 보고서를 읽는다는 보장은 없으나 적어도 회의 1달 전에는 위원들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보고서의 제출시기와 함께 보고서의 제출 방법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 대한 심의시 위원들은 신뢰할만한 자료라고 하여 우리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하였으나 러시아심의회과정이나 한국의 심의회과정에서 위원들은 직접적으로 국제사면위의 보고서를 많이 인용하였다. 따라서 보고서를 직접 위원들에게 제출하지 말고 국제사면위나 SOS Torture 등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제인권단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 위원들에게 보고서의 신뢰성을 부여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위원들이 영어권뿐 아니라 불어권등이 많으므로 보고서의 영역본 아니라 불역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국제사면위는 불역자료도 보내다고 함).

다. 보고서는 가급적 협약가입후의 상황을 토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위원들은 한국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민간정부의 출범 전과 후를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정부의 출범이후 및 협약가입후의 상황이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 그러한 문제가 과거로부터 지속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문제인지 여부와 과거로부터 지속된 것이면 현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하는 점들이 설명되는 것이 위원들의 문제인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 로비활동이 보다 계획적일 필요가 있다. 고문금지위는 개별국가에 대한 보고관이 심의를 주도하고, 가장 중요한 결론 및 권고사항을 작성하기 때문에 특히 보고관에 대한 접촉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회의에서 다행히 일찍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한국보고관인 주판직씨과 레그미씨와의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었다. 그러나 비교적 짧은 시간(30분-40분정도)에 고문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다 설명하기는 매

우 어려웠다. 그래서 주제가 국가보안법으로 집중되었는데 정작 위원회의 권고사항에서 국가보안법문제가 빠지고, 또하나의 중요문제인 불처벌문제가 오히려 긍정적 측면에 포함된 결과에 비추어 불처벌문제나 구제제도의 문제점을 좀 더 이야기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일반 위원들에 대한 로비는 휴식시간 등을 통하여 잠깐잠깐하더라도 보고관에 대한 로비는 충분한 시간(점심시간이 13:00-15:00까지이나 위원들은 보통 14:00경 별도의 회의를 갖는것 같고, 실제로 주판직과 대화시 주판직은 14:00회의를 이유로 일찍 자리를 뒀다. 이러한 점에서 점심도 충분한 시간은 못되는 것 같다) 여유를 갖고, 위원들에게 우리의 주장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나 위원들의 의견도 미리 구하여 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 심의시 위원들은 국가보안법의 남용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질문시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그러나 정작 권고사항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었다. 다만 결론 중 일부인 우려사항에서 그 자의적 사용 가능성을 경고하였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권고사항을 작성한 주판직씨에게 이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였고 이에 주판직씨는 한 나라의 법률에 대한 폐지를 어떻게 권고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권고사항2항에 함축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와 대화시 국가보안법 문제를 많이 이야기 하였으나 결국 그에게 국가보안법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데 실패한 셈이다.

바. 국가보안법문제와 관련하여 공동보고관인 레그미씨가 영문으로 된 국가보안법규정을 한국정부대표단에 요구하였으나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혹시 우리에게 있다고 물어 왔다. 그날(월요일) 즉시 한국에 연락하여 팩스로 영문국가보안법규정과 문제점을 기술한 자료(박원순변호사 쓴것)을 받았으나 시간이 늦어 한국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 수요일 오전회의전에 가까스로 전달하였다. 시간상 우리가 준 자료가 이용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이후에는 보고서에 영문으로된 관계법령이나 자료, 판결, 결정 등을 첨부하거나 아니면 회의 참석시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 권고사항에 정부에서 단호히 거부하고 있는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보장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권위원회의 설립과 관련하여 구금시설감시를 위한 독립된 기구의 설립, 그리고 특히 민간단체보고서에서 언급된 고문피해사예에 대한 조사및 서면보고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나름의 소득으로 들 수 있는 것 같다.

9. 이후 지속되어야 할 활동

가. 고문금지위원회의 공식출간된 결론및 권고안 입수

나. 위원회에서 한국정부에 서면보고를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정부의 보고 및 위원회의 심의 절차 파악.

다. 권고된 사항에 대한 정부에 대한 이행 촉구 및 그 감시활동

라. 구금시설에 대한 독립된 감시기구의 설립 및 고문사례조사활동과 관련하여 정부에 민간단체와 공동논의 촉구

마. 고문사례의 발생시 이를 영.불어 등으로 번역하여 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송부(위원들의 임기 및 다음 보고서 제출일정 감안)